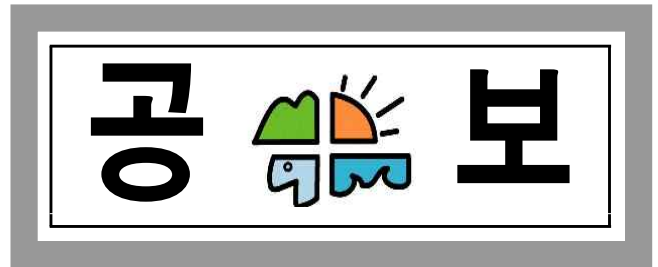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38호 2012년 11월 29일(목)

공 고

○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회 랑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법하고 능률적으로 하수행정을 추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배수설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6조)
- 나. 배수설비공사의 공사비 산정방법을 정함(안 제9조)
- 다. 배수설비공사의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라. 상수도급수 이외의 사용자에게 대한 오수배출량 조사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 마.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 바.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함(안 제2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하수행정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10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99(대포동 542)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담당(전화: 033-639-2931, FAX: 033-639-2497

E-mail: yjw517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담당 박동희 (전화번호 : 033-639-29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 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개인 오수·우수받이 및 펌프장과 수용가가 자기의 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대행업자”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수설비공사 등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일시사용 신고)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해당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 서류의 사본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준공검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제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납부) ① 제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납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납부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납부한다. 다만, 최초 허가 연도는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2.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시 납부한다.

제6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시에는 인·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1의 배수설비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수 압송펌프시설 설치 등 개인배수설비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을 저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설치기간의 연기) 조례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미터 이상 배수설비를 하여야 하는 의무자
2.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공공사업과 관련되어 배수설비공사가 공익을 저해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공사비의 산정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비 산정(算定)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시중 물가에 따라 단가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비 산정(算定) 시 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설계비와 감리비를 산정하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사 완료 후 당초 계획했던 물량이 증감할 경우에는 준공 시 정산한다.

제10조(공사비부담) 옥외시설과 옥내시설, 개인 오수·우수받이 및 압송펌프시설은 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 신규 지정을 위해서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후에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정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시장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중 지정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를 1년 이상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두고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⑤ 대행업자의 지정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배출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줄일 수 있다.

⑥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교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처분)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건설업면허 결격 및 지정기준에 부적합 요건이 발생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4.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을 지정 받은 것이 발견된 경우
6. 해당연도의 배수설비 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지체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재시공 명령 및 제16조에 따른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법령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 계약질서 위반 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하수도 행정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경우

제13조(공사의 시공 등) ①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개인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가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 하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인 오수받이 관리요령과 개인 압송펌프 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6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2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 후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과 제14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3. 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입증 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아니 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만 한다.

제18조(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개인하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와 개인압송펌프장치는 정기적인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하여 하수도의 배출장애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2. 설치장소에는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사용자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속초시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전력(1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관으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급수관의 구형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형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2세제곱미터를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만,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은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형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前)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두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 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시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않고 옥내 누수 등으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前) 4개월 사용량 또는 전년도 기존의 조정량으로 하고 목욕탕 등 계절별로 증감이 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⑤ 업종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 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오수발생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⑥ 2호(戶)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의 급수 시에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조정한다.

1. 원(元)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상수도 가구 분할 신청에 따라 조정하고 지하수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분할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⑦ 「속초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급수 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자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을 「속초시 급수조례」 또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 공급약관을 준용한다.

제22조(사용료 고지 등) 사용료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제2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조례 제16조에 따른 개별건축물 등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을 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준공) 검사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3.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의 완공 당시 오수발생량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에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제24조(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항력이 발생하여 납부가 곤란할 때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가정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시설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4. 「속초시 급수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라 누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5. 오수처리시설과정을 거쳐 발생한 하수가 공공하수도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감면대상자로서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7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④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될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부대에 대하여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제출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2. 조례 제6조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3. 조례 제1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4. 조례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제26조(이의신청) ①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점용료, 공사비,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① 사용료 및 점용료와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독촉장이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에는 수도요금 독촉장과 동시에 발급하고, 그 밖의 징수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28조(위탁)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시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오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支管)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mm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 인구(명)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관의 지름(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mm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면적(㎡)	200 미만	600 미만	1,200 미만	1,200 이상
관의 지름(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배수량(㎥)	1,000 미만	2,000 미만	4,000 미만	6,000 미만	6,000 이상
관의 지름(mm)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제19조제2항 관련)

구 경		최 대 출수량 (㎥/분)	표 준 출수량 (㎥/분)	1시간당 출수량	
m/m	인치 (inch)			최 대 (㎥/시간)	표 준 (㎥/시간)
20	3.4	0.03	0.025	1.8	1.5
25	1	0.06	0.05	3.6	3
30		0.845	0.069	5.07	4.1
32	1-1.4	0.1	0.08	6	4.8
38	1-1.2	0.15	0.13	9	7.8
40		0.17	0.135	10.13	8.1
50	2	0.26	0.2	15.6	12
65	2-1.2	0.45	0.3-0.4	27	18-24
75	3	0.62	0.5-0.53	37.2	30-31.8
80		0.705	0.564	42.3	33.8
100	4	1.20	0.85-1.1	72	51-66
125	5	1.90	1.4-1.7	114	84-102
150	6	2.70	2.1-2.6	162	126-156
175	7	3.80	3.3	228	198
200	8	5	4-4.3	300	240-258
250	10	8	6-7.5	480	360-450
300	12	12	9-11	720	540-660
350	14	16	14	960	840
400	16	21	17-20	1,260	1,020-1,200
450	18	27	25	1,620	1,500
500	20	33	30	1,980	1,800

[별지 제1호서식]

공 공 하 수 도 일 시 사 용 신 고 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주 소					상 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용장소						
	사용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사용목적						
	사 용 수		상수도수·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해수·기타				
	공 사 명						
	배출시설						
배 출 량		일 평 균	m ³	월 평 균	m ³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4. 오수배출량계산서 1부 5. 공사 공정표 1부.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5일
신 청 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점용장소				
	점용기간				
	점용목적				
	점용면적				
	공사내용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해당함) 3. 인가서·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4. 기 타					

[별지 제4호서식]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호 관련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증

주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일 때는 등록번호)

점 용 장 소

점 용 목 적

점 용 면 적

최초 허가일

점 용 기 간

허 가 조 건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점용을 허가합니다.

일 일 일

속 초 시 장 직인

비 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5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제 호	년 도	속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	(항)	
(세 항)	(목)	
일금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경과 시 100분의 3의 가산금 적용)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 속초시청금고 속 초 시 장 (인)		
공사위치		
납 부 자		

영 수 필 통 지 서			
제 호	년 도	속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	(항)		
(세 항)	(목)		
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속초시장 귀하			
공사위치			
납 부 자			
징 수 관	(인)	취 급 자	(인)
수 입 금	(인)	기 장	(인)
출 납 원			

영 수 증		
제 호	년 도	속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	(항)	
(세 항)	(목)	
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공사위치		
납 부 자		
속 초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신청서					처리기간
					5일
설치자	① 법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번호:)			
설치신고	⑤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⑥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흙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평균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⑦ 설치위치	속초시 동 번지(통 반)			
	⑧ 배출수량	m³/일			
	⑨ 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⑩ 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⑪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⑫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⑬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시작신고	⑭ 배출수량 및 수질	수량	(m³/일)		
		수질(mg/ℓ)	BOD: , COD: , SS:		
	⑮ 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음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진
3cm×4cm

영업장소 :

상 호 :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7항에 따라 배수
설비공사 대행업을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구 분	변경일자	변 경 내 용	기재책임자	
			성 명	증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0호서식]

공공하수도 공사대행업 지정서 교부대장

결 재			지정 번호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생년 월일	교부 연월일	비고	사진
과장	담당	주무관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 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속초시 동 번지(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³/일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검사일자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염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시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 용 량·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사 용 자	하수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감 수 량	제 품 명	단 위	월간생산량	물 함 유 량(m³) (비율%)	물 사용량(m³)	기타감수량(m³)	
하 수 도 사 용 량	용수총량(m³)		감 수 량(m³)		해수배출량 (m³)		사 용 기 간
							· · · ~ · · · (일간)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 2. 기 타							

(뒷면)

사무명	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사무 내용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적용되는 요금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 과정	접 수 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 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즉 시
	최종 결재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현장조사사항	신고내용 현장 확인				
	처리 요건					
	후속 민원					
	처리 흐름	접수→현장조사→결재→통보				
근거 법규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9조					
구비 서류	입증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보내는 사람

주소 : 속초시수질환경사업소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길 99
우217-100

하수도(지하수)사용료 고지서

속초우체국
요 금 후 납

받는 사람

주소 :

우000-000

하수도(지하수)사용료 영수증 (수용가보관용)

관리번호 : 부과년도 : 부 과 월 :
사용기간 :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계량기종류 : 구 경 :
당월지침 : 전월지침 :
사용시간 : 출 수 량 :
인 원 수 : 가 구 수 :

업 종 : 사 용 량 : 고지구분 :

하수도사용료

납기내금액 : (납부마감일 : 0000.00.00.)

납기후금액 : (납부마감일 : 0000.00.00.)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장 (인)

하수도(지하수)사용료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부과년월 :
관리번호 :
성 명 :
주 소 :

업 종 :
사 용 량 :

하수도사용료

납기내금액 : (납부마감일:0000.00.00.)

납기후금액 : (납부마감일:0000.00.00.)

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속초시장 (인)

하수도(지하수)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발행기관보관용)

관리번호 : 부과년도 : 부 과 월 :
사용기간 :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계량기종류 : 구 경 :
당월지침 : 전월지침 :
사용시간 : 출 수 량 :
인 원 수 : 가 구 수 :

업 종 : 사 용 량 : 고지구분 :

하수도사용료

납기내금액 : (납부마감일 : 0000.00.00.)

납기후금액 : (납부마감일 : 0000.00.00.)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장 (인)

제 호 독 축 장						
종 목	해당연도	월 분	채납액			비 고
			본 세	가산금	계	

위의 금액이 채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이 독축장의 크기는 우편엽서와 같음

140mm×100mm(보존용지(1종)120g/㎡)